第225回國會 政務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11月6日(火)
場 所 政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2년도예산안(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
   나. 국가보훈처

審査된案件

1. 2002년도예산안(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 ····· 1
   나. 국가보훈처 ····· 24

(10시20분 개의)

○**委員長 朴柱千**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02년도예산안(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
나. 국가보훈처

○**委員長 朴柱千** 의사일정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소관의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심의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오전에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후에 국가보훈처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李南基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朴柱千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1351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700억 3700만 원에 비하여 65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등을 최근 2개년 수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폭 증액 계상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178억 1800만 원, 기본사업비 46억 1300만 원, 주요사업비 27억 8700만 원, 총 252억 1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220억 7100만 원에 비하여 14.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법 적용의 국제규범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부당공동행위 근절을 위해 카

르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보급과 소비자피해일괄구제제도 운영과 관련된 소요경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조사를 확대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고 늘어나고 있는 행정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불요불급한 용역사업을 줄여나가고 홍보자료 유인비 등을 절감 계상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전자정부의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正去來委員會事務處長 趙學國**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의 조직과 기능은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3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1351억 1200만 원으로 금년의 700억 3700만 원에 비해서 9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과징금이 1321억 38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621억 3800만 원이 증액편성된 데 기인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52억 1800만 원으로써 금년예산 대비 31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781억 1800만 원으로 17.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 직제개정에 따른 14명 증원 그리고 예산상 별도정원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사업비는 74억 원으로써 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사업비는 3.5%가 증가하였고 주요사업비가 27억 8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4.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계속사업은 11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5%가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포괄적시장개선대책사업에 1억 900만 원, 카르텔 제보자 보상제도 운영에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주년기념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업비 총액은 27억 8700만 원이고 계속사업이 25억 22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2억 6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지원행위 조사입니다.

부당지원행위 조사는 계열기업 간 자금, 자산, 인력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도 대규모 기업집단 중 부당내부거래혐의가 큰 기업과 공공사업체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2억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조사회수를 줄여서 7500만 원 정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제도 운영입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조사 공표하고 소비자피해일괄구제제도, 소비자종합홈페이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버소비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불공정거래 약관의 시정과 표준약관 확대보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10개 업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5개 업종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4억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3700만 원을 절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이 예산은 전자상거래 소위 B2C와 관련된 예산과 B2B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합니다. B2C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관련 시책 연구라든가 세미나 개최,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감시시스템의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문판매법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B2B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시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1억 9500만 원을 반영해서 금년 예산보다 7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연구용역비와 감시시스템 도입을 위한 경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서면조사 및 분쟁조정지원 예산입니다.

하도급거래는 원래 신고자들이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만 5000개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만 개 사업체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분쟁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경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3억 8600만 원이 이 분야에 반영되어서 금년 예산 3억 50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분쟁조정업무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관련경비를 증액한 데 기인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독과점시장구조개선사업입니다.

실제로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와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부터 여기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중요한 기업결합심사 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기업결합심사 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경쟁정책의 질적 향상과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분석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1억 4300만 원을 반영해서 경제력집중지표 개발이라든가 중요사건 처리 시 시장분석업무, 외국의 공정거래 심결사례 분석,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 준가맹사업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공정거래 성과를 계량화 하기 위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수행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9월말 현재 행정소송 계류건수가 116건으로써 매년 소송계류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사건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승소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변호사 수주는 일반사건의 경우는 착수금 1500만 원, 승소사례금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부당내부거래같은 경우는 착수금 1000만 원에 승소사례금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 분야의 소송이 늘고 있기 때문에 3억 3700만 원을 반영해서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부당내부거래사건 10건, 중요사건 12건, 일반사건 35건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경쟁정책 홍보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공정위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설교재라든가 홍보자료 발간,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경쟁당국이라든가 국제기구 등에 저희 위원회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대외홍보활동비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1억 9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기반확충 예산입니다.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자결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회가 생산하는 모든 문서의 생산, 보존, 폐

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자료의 관리라든가 검색, 활용, 정보공유화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방지, 자료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침입탐지와 보안메일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서 내년에는 자료의 정보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예산은 4억 95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억 6400만 원에 비해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사무소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각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방특성산업에 대한 분석 및 경쟁촉진방안연구, 지방사무소의 직권조사 실시로 인한 경비 등이 금년 예산 수준과 비슷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IBRD 지원차관사업은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4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 신규사업입니다. 포괄적시장개선대책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일부 절감한 예산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내년에 1억 9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료유인비로 400만원, 조사여비로 7400만 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안연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신규사업으로 카르텔제보자 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보상금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카르텔의 경우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3자 또는 내부자의 신고가, 제보가 사건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5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증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에 이어서 서울경쟁포럼을 내년에 한 번 더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경쟁포럼이 소위 베를린 독금회의나 이런 수준으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은 국제토론장으로 격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 한 번 더 개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제로,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로 자국의 경쟁질서보호를 위해서 각국이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대비해서 우리도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역외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WTO중심의 경쟁라운드협상에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500만 원으로 서울경쟁포럼에 5500만 원, 역외적용에 2600만 원, 경쟁라운드출범대비연구에 23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본사업비는 각국의 기본적인 관서운영비 등 기본사업비로 46억 13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3.5%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각 국별 예산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인건비가 178억 1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경비하고 직제가 개정이 되어서 14명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경비와 또 기능직의 경우 저희 위원회가 기능직 9등급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그동안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해서 반영한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유학 등으로 해서 별도 정원이 늘어난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 내용은 각 부처와 공통적으로 수당기준이 변경된 것 등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鄭鎭龍**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문제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문제점으로 가산금 세입예산의 과소계상문제입니다. 체납금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대수익 내지는 기회비용을 환수하고 적정한 제재수

단의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 하루에 1만 분의 4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징금 예상 수납금액 및 3년간 가산금 평균수납률 등을 감안 29억 5800만 원의 가산금 세입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2000년도부터 행정소송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산금 부과 및 수납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둘째, 내년도에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대법원확정판결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가산금 수납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74억 2352만 5000원의 가산금이 수납되고 작년에는 9월말 현재 이미 45억 원이 넘게 수납되어 있으므로 결국 최근 가산금 수납률의 증가추세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진행상황 및 2001년도 가산금 수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가산금 세입예산은 과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증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문제점으로서 첫째, 포괄적시장개선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괄적시장개선대책 추진사업비로 총 1억 2336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이란 불공정행위가 반복발생하거나 독과점구조가 고착된 업종 등을 산업별, 시장별로 제도정비, 구조개선, 행태시정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경쟁법 집행방식을 기존 개별사건 위주의 단편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별, 시장별로 종합처방책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질서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 사업의 추진예산을 국내 여비 등 예산으로 활용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주요사업비로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이미 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내년에 또 새로운 업종을 지정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종결하지 못한 6개 업종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향후 CMP 추진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동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 중 신규업종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와 관련된 여비 및 조사활동비 예산은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 카르텔제보자 보상제도의 실효성 미흡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제도 운영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카르텔 속성상 참여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면책보다는 카르텔 유지에 따른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신고사례는 동 제도시행 이후 1건에 불과하여 신고자 면책제도는 카르텔 근절에 한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카르텔 업종과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제시가 거의 불가능해서 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카르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는 그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연구개발비 예산의 과다계상입니다.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개발비 총 예산은 8억 2778만 8000원으로서 모두 20개 과제의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비자보호제도운영에 광고실증자료검증비로 1800만 원,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조사를 위해 2000만 원의 연구개발비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작년과 금년에 걸쳐 실적은 단 1건에 300만 원만을 지출하였는 바 이러한 실적을 감안해서 동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전자상거래 시장질서의 전자거래 및 특수판매분야 분쟁조정기준 제정연구를 위해 2909만 6000원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2000년도의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한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국외여비 예산의 과다 계상문제입니다.

먼저 기관운영기본사업비 중 심판관리실의 국외여비 예산은 2193만 9000원으로 이는 출장자가 고위직에 해당되고 해마다 동일한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점에서 동 예산을 조정하거나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국 기본사업비에는 국외여비 113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7개의 자문위원회 중 유독 약관심사자문위원에 대해서만 해외출장을 실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출장목적 또한 매년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그 효과성이 의문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재원 예산의 조정문제입니다.

표3의 최근 3년간 관서운영비 전용률을 보면 2000년도에는 31.6%, 1999년에는 42.2%에 해당하므로 이처럼 해마다 관서운영비가 주요 전용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분만 넣고 5분은 필요한 분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柱宣 위원 질의하시지요.

○**朴柱宣 委員** 2002년도 예산편성안 중에서 과징금 부분이 92.9%가 증가되었는데 정확한 계산방식이라든지 증가율을 예상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그렇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과징금이 있고 내년에 납기가 도래하는 과징금, 그리고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과징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대개 1년에 1000억 정도 부과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과징금이 당초 몇 차례 과하게 부과되는 것은 가능한데 반복적으로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과거 2년 정도의 실적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朴柱宣 委員** 예산을 편성하면서 92.9%, 거의 100%에 육박하는 증액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거나 또는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되어 소송비용이 증액되는가 하면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에서 부과한 증액된 과징금이 깍여서 공정위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시고 다만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예산의 목표를 의식하지 않고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다음에 가산금이 연리 14.6% 정도로 부과되고 있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朴柱宣 委員**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말하는 국세체납에 의한 가산금과 비교해 보건대 가산금 비율이 좀 높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가산금 금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가산금은 제 때에 과징금을 납부해 달라는 징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이것이 너무 높은지 아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같은 징벌적 처분인 체납처분에 대한 가산금과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성격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가의 징벌권 행사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다음에 클린 마켓 프로젝트(clean market project)와 관련해 가지고 6개 분야를 포괄적으로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의 쌀수매와 관련된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갈수록 흉포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쌀수매에 있어서 시장가격에 의해 수매해서 시장가격대로 방출하는 것이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쌀의 시장가격 형성이 요즘은 대형 할인마트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집행해야 할 농업대책 내지 농민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쌀값 형성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적으로 공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클린 마켓 프로젝트에 쌀값 형성과 관련된 부당행위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가지고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저히 쌀값 납품가격을 할인 받거나 다운시켜 받아서 농민들이 쌀값 저하로 인해서 보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도 이것을 감안해서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대형 유통업체에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건수가 2000년하고 2001년하고 비교해 보건대 어느 정도 증감이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9월말 현재 116건이 계류되어 있고 소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朴柱宣 委員**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는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전과 달리 기업들이 대개 적든 크든 관계없이 모두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두 번째는 경영하는 간부들 입장에서는 총 책임자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까지 최종 판정을 받는 것이 오너에 대한 설명으로서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어차피 소송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서 거의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면서 거의 일반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朴柱宣 委員**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고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들이 20년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 들어서 고발건수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발협의회를 두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柱宣 委員** 고발에 대해서 사건처리 통지가 될 텐데 무혐의처리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들이 보낸 것 중에서 비교적 무혐의, 불기소처분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朴柱宣 委員** 원인이 뭡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근본적으로 근거를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카르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추정조항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서는 증거가 명백하게 없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의 서로 다른 견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柱宣 委員**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의 공권력 발동을 하는 기관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발 측면에 있어서는 준사법기관이에요.

그런데 같은 국가기관끼리 고발에 대한 불기소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남용으로 인해서 국가 행정력의 낭비도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동안 처분한 예를 기준으로 삼아 고발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견해차이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고발 건이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항간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기도 어려운,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보복적인 측면에서 고발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性憲 위원 질의하시지요.

○**李性憲 委員** 한나라당의 李性憲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성적주의를 채택함으로서 직업공무원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원칙은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권의 핵심부와 결탁된 정치관료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처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금과옥조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음을 저는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모 언론사 간부기자가 펴낸 'DJ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현 정부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언론사를 조사하고 특정언론사 사주를 구속시킨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 한 수석과 현 정권의 실력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2001년1월11일 DJ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했다.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는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DJ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현 정권은 정권초부터 아무리 잘해도 비판을 받았다. 호남편중인사구도, 경제위기를 과장하는 보도경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부터 조·중·동의 격렬한 비판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다. 정확히 말하면 언론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사 타격이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무슨 배짱으로 DJ는 세무조사를 시작했을까? 정답은 정권과 언론의 결별이다. 언론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인터뷰 내용이나 필자의 견해를 볼 때 언론사 조사는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 정권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데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24일 재·보궐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노량진수산시장 매각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해서 또 현 정권의 이해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를 볼 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이며 위험한 수위를 넘어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상황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의 신분보장과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통령과 정권유지에 눈이 먼 특정세력들에게 계속 이용당하도록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으로부터의 신뢰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9월17일 중앙일보에서 66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촉진한다고 보는 것은 10개 사였고 경쟁 저해가 11개, 그저 그렇다가 45개로서 56개 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정위의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경쟁촉진적이라고 보는 데가 9개, 경쟁 저해가 21개, 그저 그렇다가 35개로서 전체 84.8%가 정책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및 공정위 정책운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올해 CMP사업은 그럴 듯한 CMP사업의 의의를 포장해서 결국 언론사 조사를 위해서 동원된 사업이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요사업이었다면 작년 예산안 심사 때 보고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행 전에 정무위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 건을 거울삼아서 2002년도 공정위 예산은 주요 신규사업 등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대단히 타당한 검토보고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CMP사업예산은 당초 항목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정책국, 독점국, 경쟁국, 소비자보호국, 하도급국, 조사국에 책정되어 있던 기본사업

비와 주요사업비를 모아서 모두 1억 8302만 1000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사용내역은 모두가 조사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 CMP사업 대상업종인 신문, 잡지 및 방송에 대한 조사 중 특히 무가지 조사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업종선정 시에 가장 기초적인 여론조사나 데이터 수집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CMP 관련 대상업종을 신규로 6개를 다시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예산 1억 2336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했던 CMP사업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CMP사업에 대한 예산 1억 2336만 1000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유인비 4709만 9000원, 신규 CMP업종 직권실태조사비 7445만 9000원, CMP 추진전략 및 창구추진방안연구비 3042만 3000원, 조사활동비 2440만 원 등 모두 1억 2336만 1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정책국과 조사국 등 6개국 자체예산으로 올해 선정된 대상업종에 대한 조사결과와 평가를 정무위의 보고를 받은 후에 그 결과와 평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예산정책국 예산안분석보고서 모두가 카르텔 제보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역시 계상액 50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오히려 지방사무소에 증액편성을 해서 지방사무소 활동을 강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31일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공정거래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대기업집단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그 자산규모 기준을 얼마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3조로 공정위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아직까지는 안이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공정거래위원회 안은 나와 있고 관련부처와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李性憲 委員** 공정위 안에서 그 근거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현행 30대 기업집단이 2조 50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숫자가 너무나 줄어드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2조 5000억이라는 것이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3조로……

○**李性憲 委員** 그렇게 할 경우에 몇 개 기업만 남게 되는 것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4월1일 기준으로 24개가 남습니다.

○**李性憲 委員** 재경부에서는 자산규모의 기준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구체적으로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10조 정도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렇게 할 경우에 몇 개 기업이 남게 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11개가 남게 됩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것은 부처 간 협의를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性憲 委員**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규모가 줄어든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입찰담합처리 관련해서 재·보궐선거 바로 하루 전인 10월24일을 발표시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전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례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피심인에게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미리 언제 회의가 열립니다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李性憲 委員** 그러면 실제로 그 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언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서면통보를 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당연히 일주일 전에 그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李性憲 委員** 서면통보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17일 오후 4시에 전화로 불러 가지고 담당자를 오게 해서……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문서발송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李性憲 委員**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10월17일 16시경에 공정위에서 사조산업부장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公正去來委員會流通去來課長 玉化榮** 예, 불렀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급하게 중요한 것을 알려줄 것이 있으니까 공정위로 와달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公正去來委員會流通去來課長 玉化榮** 두 가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통보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자료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날 왔을 때 준다고 그랬습니까?

○**公正去來委員會流通去來課長 玉化榮** 서면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李性憲 委員** 심사보고서를 사조산업에서는 그날 와서 받았다 그러는데 서면으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公正去來委員會流通去來課長 玉化榮** 서면으로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문서통보방법이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서면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왔을 때 그날 그 문서를 준 것이지요?

○**公正去來委員會流通去來課長 玉化榮** 공문하고 같이 주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닙니다. 회의개최 통보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일주일 전에 통보가 되었고 아마 심사보고서를 그날 와서 수령한 것 같습니다.

○**李性憲 委員** 지금 저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담합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재·보궐선거가 10월25일에 있는데 24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정례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례적으로 그때 발표하지 않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이 아닌 2000년6월12일 동아건설의 상호출자금지 규정위반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의결은 월요일에 했습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회의가 아니고 그것은 분과위원회이고 전체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정례회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아마 금요일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전체회의는 매주 정례적으로 수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李性憲 委員** 전체회의 소집은 누가 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전체회의 소집은 의장인 제가 합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그날 회의의 토의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당연히 회의록이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 기록 제출할 수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지금까지 회의록은……

○**李性憲 委員** 대외비 사항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그렇습니다.

○**李性憲 委員** 어떻게 대외비 사항이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왜냐하면 위원들이 서명한 의결서를 제출해 드리기 때문에……

○**李性憲 委員** 그러면 의결서 기 제출한 것은 다 위법이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닙니다. 의결서는 다 공개되고 인터넷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李性憲 委員** 그날 의결한 토론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서는 다음 날이면 공개가 됩니다.

○**李性憲 委員**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보면서 마

치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처럼, 사실이 아니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선거까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당연히 정치인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동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는 관례적으로 공보관실에서 기자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날도 제 의견은 선거 끝나고 그다음 날 보도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사단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보도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그렇게 비약해서 선거까지 관련시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비약이라고 봅니다.

(朴柱千 위원장, 李訓平 간사와 사회교대)

○**李性憲 委員** 과도한 비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시각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3개 업체에서 의견제출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연장해 주었습니다.

○**李性憲 委員** 동시에 공정위 전체회의도 11월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하고 25일은 딱 하루 차이입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꼭 수요일에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례회의는 다 수요일에 합니다. 수요일 오후 2시가 매주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제가 이것 다 읽어드릴까요. SK텔레콤의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은 200년5월16일 화요일에 했습니다. 2000년2월14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검찰고발은 금요일에 했습니다. 까르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의결은 3월11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지금 조사를 해 보시면 공정거래 전체회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정례화되어 있는 것이 10년 이상의 관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 급히 빨리 처리해 달라는 부처의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수요일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같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미 본인이 2, 3일 내에 다 했다고 해서 더 이상 하고 말 것이 없는 그런 단순사항을 처리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李性憲 委員** 의결서는 그러면 보내줄 수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의결서는 바로 보내드릴 수 있고 위원님께서 인터넷 열어보시면 바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지금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담당자들은 의결서가 11월15일쯤이 되어야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결서를 며칠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며칠 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미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서를 원하시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의결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訓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朴炳錫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炳錫 委員** 朴炳錫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 관해서 존경하는 李性憲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또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량진수산시장의 의혹 관계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공정위가 밝혀야 된다고 위원들이 주장한 바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朴炳錫 委員** 그런데 사실은 이 발표가 투표하루 전날 나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 자신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 전에 발표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은 여권을 망치려고 그러는가, 누가 보아도 이것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은 그것이 매주 수요일 정기회의에서 된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자실에 선거투표가 끝난 다음에 발표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그날 보도를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朴炳錫 委員**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권력, 그것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권력이라는 점에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권력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면 행정부는 여든 야든 가리지 말고 그 점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선거 하루 전에 보도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 분들께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사업, CMP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전문위원보고서를 보면 1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신 개요안을 보면 1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1억 2300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보면 1억 896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것은 조사별 기본사업비, 조사활동비 1400만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을 합치면 두 지수가 다 맞습니다.

○**朴炳錫 委員** CMP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정착시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다른 위원들도 일부 지적이 있으셨지만 금년에 마무리짓지 못한 것을 조속하게 마무리짓는 것과 병행해서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직 CMP 새로운 분야를 결정하지 못 하셨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朴炳錫 委員** 금년에 이 자리에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을 피하셔서 이 CMP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알겠습니다.

○**朴炳錫 委員** 또 하나는 행정소송관계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다,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관련사항인데, 금년에 송무과라는 것을 신설하셨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새로 신설해서 14명 증원했습니다.

○**朴炳錫 委員**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으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 위원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몇 분이나 계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두 분이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열한 분이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그렇습니다.

○**朴炳錫 委員** 이 분들이 송무과 관련업무에 종사를 하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송무과에 주로 근무하지만 그러나 각 국에 대개 한 분씩 배치해서 각 국의 법률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이 문제는 관련직원의 전문성제고, 활용이라는 점이나 또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사시합격자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급증하는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訓平** 朴炳錫 위원, 예산질의 잘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嚴虎聲 위원 질의해 주세요.

○**嚴虎聲 委員** 한나라당의 嚴虎聲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전기료부과의 차등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알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본 위원도 지난번 본회의 시에 국무총리조정실장 앞으로 서면질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 서면질문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했습

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嚴虎聲 委員**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에 공급하는 전기료하고 일반주택에 공급하는 전기료가 차이가 난다, 아파트 전기료가 더 비싸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 전체세대를 단일계약자로 보고서 일괄징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0세대의 아파트주민을 상대로 단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1세대라도 전기료를 못 냈다 그러면 나머지 99세대가 그 1세대분을 분담해 가지고 다 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100세대 전체에 대해서 단전조치가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약관이 있는데 이 약관의 불공정성이 매우 현저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아파트주민대표들이 이제서야 문제점을 알고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 부분 약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전이 아파트 세대별로 직접 검침을 하고 요금을 개별부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일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층아파트의 경우에 기술적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일반 가정에 비해서 고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세대와 공동설비 간에 그러한 차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을 물론 약관 측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전기요금 정책적인 차원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측면도 보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결정 정책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산자부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물론 각 정부 부서별로 맡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부처의 일까지도 간섭한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외관상으로는 요금의 차이가 잘못됐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변전시설이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이 어차피 아파트의 경우는 고압이 오기 때문에 변전시설을 큰 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약관의 불공정성 측면에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래서 제가 어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산자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아마 한전 아니면 산자부 측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공급체계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개선안을 11월 말까지 내는 쪽으로 용역계약도 체결하고 연구가 진행 중이고 며칠 후에는 공청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부서가 종합적으로 시급히 의견을 조율해서 일반 소비자가, 국민이 엉뚱하게 주머니 돈이 빼긴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알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또 하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체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은 것인데, 공장의 전기료 부과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에 공장을 가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날에는 예컨대 1000㎾를 썼다, 또 어떤 날에는 800㎾를 썼다, 어떤 날에는 1200㎾를 썼다 이래 가지고 매일 매일 사용하는 전력량이 다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사용한 날에 사용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공장가동일자를 곱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명백히 불공정한 거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것이 사실이라면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嚴虎聲 委員**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는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정부 관계부처에다 제공도 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인데 일단 이런 문제제기를 이 자리에서 해 놓습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알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세 번째는 휘발유값 이것이 휘

발유회사의 담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바이산 원유 1배럴당 가격이 30불이었습니다. 그때의 우리 나라 휘발유 1ℓ 값이 1330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두바이산 원유값이 18불로 내렸단 말이에요. 무려 40%가 내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휘발유값은 1300원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반국민들이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내왔단 말이에요. 휘발유값을 지급을 하고 차를 몰아왔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하나 둘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영방송인 KBS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식으로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가가 하향되었으면 그에 따른 소비자가격도 따라서 일정비율로 낮춰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유사에서는 기껏 몇 십원 정도의 가격차별을 둔다는 이유로 이것은 담합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가의 휘발유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가가 이렇게 낮춰졌다는 것을 감춰 버리고 몇 십원 정도의 가격 차별화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의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아울러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돈을 뺏기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알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다음에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다 지적을 하셨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세입예산의 추계기준을 징수부과결정액을 기준으로 하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런데 실제로 세입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확정된 금액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嚴虎聲 委員**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0년도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서 환급해 준, 다시 말씀드려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징수부과결정액의 한 4.68% 정도쯤 되고요, 금년 10월20일 현재는 1.46%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까르푸하고 인천정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패소고 하나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유예입니다.

○**嚴虎聲 委員** 유예지만 사실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닙니다. 그것은……

○**嚴虎聲 委員** 인천정유의 재무상태가 좋아지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렇습니다.

(李訓平 간사, 朴柱千 위원장과 사회교대)

○**嚴虎聲 委員**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대법원에서의 최종확정판결에서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흐름으로 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제로 징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잡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불과 2, 3년 사이에 저희들의 과징금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받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訓平 위원 질의하시지요.

○**李訓平 委員** 李訓平 위원입니다.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사업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개별사건 위주의 조사에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 의료, 제약 등 6개 업종에 대해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233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중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국에서 기존의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예산의 활용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편성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향후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 추진방안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선정된 6개 업종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의 집중배정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흡했던 분야는 어느 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동강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활동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언론사의 불공정 관행을 묵인한 공정위의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정상적인 공정위의 조사활동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대책강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 대기업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활동을 하면서 조사가 미진했던 곳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및 가산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연구개발비 예산관련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과 관련한 질의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富謙 위원 질의하시지요.

○**金富謙 委員** 金富謙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에 배정된 조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주로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각종 불공정한 그러한 사례를 조사하는……

○**金富謙 委員** 각종 불공정이지만 물론 다른 데는 보니까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지 않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라든가 재벌, 이들의 부당내부거래나 혹은 부당지원행위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국 한 개국이고 저희들이 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에도 조사활동비가 있고 저희들의 업무 자체가 위반사건처리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활동이 일반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金富謙 委員**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 중에서 조사국, 이것은 뭐 여러 국이 다 자기업무를 하지만 그 중에서 조사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한 업무수행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의지를 혹시 반영한 것 아닌가……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조사활동비 7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에 계상되지 않았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비를 별도로 넣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일부 분야의 조사는 중복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합쳐둔다면 감액되지 않았고 저희 조사의지가 퇴색된 것은 아닙니다.

○**金富謙 委員** 금년에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CMP, 자체 프로젝트의 기획 자체는 작년에 이미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金富謙 委員** 그런데 금년 예산에 CMP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용을 많이 해서 썼어요, 그렇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金富謙 委員** 특별히 그 중에서 지금 자꾸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왜 조사를 하면서 특히 언론분야에만, 물론 많은 분들이 갔으니까 그렇겠지만 1억 13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책국 이하 다른 국들이 정보통신이니 의료제약이니 이런 분야에는 겨우 70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조사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경제적인 역할에 대해서 회의가 오는 겁니다.

지금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경쟁촉진정책 혹은 재벌정책을 주업무로 해야 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도 정권을 위한 정책에 치중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공정위의 정체성과 독립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작년에 조사비로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이 사실상 언론사조사로 전용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대기업정책이나 재벌정책에 대한 의지가 혹 약화된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활동비나 CMP에 들어가는 조사활동비가 물론 그 명칭이 다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분야를 보면 일반분야의 불공정거래조사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조사를 했고 그 6개 분야 중 텔레콤이라든지 하는 분야를 보면 재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큰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조사의지가 약해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富謙 委員** 그러면 내년 예산에 부당지원행위조사비를 깎도록 혹 기획예산처나 다른 경제부처로부터……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니,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CMP 계상항목을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7500만 원 정도를 그쪽에 넘어갔다고 봐서 저희들이 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 나가서 조사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 것이지 결코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저희들 조사활동비가 깎인 것은 아닙니다.

○**金富謙 委員** 최근에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론 위원장님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십니다마는 대재벌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8월13일에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죽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정·재계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합의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재벌 내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부처장관회의나 다른 부분으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것은 재계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국사업자가 대주주로 있는 경우 만약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경우로, 아주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의결권을 풀어주겠다, 왜냐하면 ……

○**金富謙 委員** 거기에 말이지요, 같은 계열사에 투자한 금융보험사들의 자산 그것이 자기들 것이 아니지요, 고객 것이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고객 돈입니다.

○**金富謙 委員** 고객 것인데 투자 목적으로 갖다가 거기에서 의결권까지 행사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만약 결과적으로 부당내부거래행위가 되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러나 금융보험회사의 자산이라고 해서 전부 고객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기본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개별법에 의해서 3% 이내 또는…… 이러한 제약이 개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진장 고객 돈을 갖다가 투자할 수는 없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삼성자동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삼성생명의 주식상장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들 내부거래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완화하는 조치를 왜 하지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룹군들이 얼마 정도 돼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현재 저희들은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두서너 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경제논리보다도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런 큰 안정된 회사를 외국기업에 뺏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책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金富謙 委員** 재계의 한두 개 그룹을 위해서 이런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원칙으로 정했던 것을 무너뜨릴 만큼 외국자본에 국내기업에 대한 침투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시다시피 거의 한 60% 정도에 육박하게 외국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고……

○**金富謙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영권을 뺏어가려고 하거나 한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없잖아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金富謙 委員** 그러면 그런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그들 스스로 어떤 자구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게 해야지 이것이야말로 고객 돈 들여다가…… 봉이 김선달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투자목적으로 해 낸 것까지도 의결권을 다 준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약 우리가…… 문제되었던 李容湖 게이트나 각종 게이트에 나왔던 그 황당무계했던 청년들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논법이 똑같아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래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다 트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정해 주자 그렇게……

○**金富謙 委員**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반대하셨어요, 찬성하셨어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가 재계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에 태스크 포스를 해서 만든 안입니다. 저희들 이름으로 냈기 때문에 제가 제안자입니다.

○**金富謙 委員** 몇 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억지로 한국의 재벌기업들로 하여금 기업환경을, 기업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말하자면 사기를 저하시킨다든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데 부응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 포지션을 지켜 주셔야만……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이라든가 재벌들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다른 부처들의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지노선을 지켜주셔야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많은 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하나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면 둑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IMF사태가 터졌던 것이고 그랬을 때 아무도 책임을 못 지고 결국은 몇십 조 되는 대그룹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그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오는 이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기본적으로 재벌정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 특히 위원장인 제 개인의 입장은 지금까지 그런 기본틀을 크게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도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좋습니다. 이 문제는 또 다음에 논쟁을 한번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세입예산 잡을 때 과거에 수납액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잡았다가 내년 예산에 비로소 1300억 가까이 반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죽 수납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확정적으로 세입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금년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내년에 소송관계를 고려…… 내년에 납부될 액수가 한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98년부터 금년까지 죽 보면 그 동안의 미수납률,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못 받거나 재판에 지거나 그랬던 것들이 70%가 넘다가 금년에는 10월까지입니다마는 50% 가까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송무기획단을 설치해서 많은 독려를 했고 특히 법원에서 최근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받아주지 않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金富謙 委員** 재벌들이나 대기업이 앞으로 과징금 확 깎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안 해요? 기업하는 환경에 자기들 저해된다고 하잖아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이미 과징금을 조치

한 것에 대해서 깎아줄 수가 없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러한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金富謙 委員** 그러면 송무기획단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렇게 미수납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안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너무 적고 한두 명이 하는 것하고 이제 전담으로 그것만 해서 14명 정도로 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金富謙 委員** 예산에 있어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합되는 예산을 보니까 송무비용 중 변호사 비용이 주요사건인 경우 착수금이 500만 원인데 요즘 전치 4주짜리 폭행사건도 착수금이 5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래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없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중요사건에 대해서 10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성과급 500만 원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준다고 보기 때문에……

○**金富謙 委員** 혹시 주요 로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들은 그렇게 원하지만 로펌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펌에서 회사 쪽, 대기업 쪽에 수임을 하면 건당 수임료를 심지어 1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위원회를 대신하려고…… 저희들은 변호사 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지경입니다.

○**金富謙 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朴炳錫 위원님께서 여쭈셨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마치신 분들이 열한 분인가 계신다고 그랬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열한 명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이분들을 말하자면 경제문제의 전문변호인으로 키워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송무문제에 대해서 담당하도록 키워 나갈 그런 플랜은 없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런 장기플랜이 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를 계속 더 받아서……

○**金富謙 委員** 문제는 이분들이 전직을 하거나 개업을 해 버리면 의미가 없고……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러나 변호사 개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명 정도 될 때까지 그러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金富謙 委員** 자꾸 새 사람이 오면 맨 날 질 것이니까 유능한 변호사로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몇 년 옵션계약으로 선진국의 로스쿨처럼 해 주고 몇 년 동안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노하우가 자꾸 축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직업선택의 자유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업하시는 분을 막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金富謙 委員**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꾸 패소율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을 위해서 쌓아온 일이 사익을 위한 노련한 변호사들 때문에 자꾸 진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렇습니다.

○**金富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大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安大崙 委員** 자유민주연합의 安大崙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많은 위원들께서 부당지원행위 조사여비와 CMP추진 조사여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CMP에 관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클린 마켓 프로젝트의 작성시점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또다시 공정위의 언론사 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좀더 절약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린 마켓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언론사를 조

사했던 조사국은 신문·방송업 조사에 소요된 경비를 조사국에 편성된 부당지원행위 조사여비로 집행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내역을 보면 이러한 클린 마켓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신규사업으로 하여 7500만 원의 조사여비를 포함하여 총 1억 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당지원행위 조사여비는 2001년 2억 5500만 원에서 2002년에는 1억 9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6400만 원이 감소됩니다.

이처럼 2002년도 부당지원행위 조사여비가 전년에 비해 대폭 삭감된 반면에 클린 마켓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조사여비를 신규로 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당지원행위 조사여비와 클린 마켓 프로젝트 추진 조사여비는 그 사업의 성격상 충분히 통합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경영을 위해서 세목별로 예산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외형적으로는 금액이 6400만 원이나 감소된 것 같이 보이나 이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투명경영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러한 질의를 합니다.

또한 이미 실시된 신문·방송업 조사에 있어서 조사국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여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하여 예산책정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번 언론사 조사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또다른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국민적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신문·방송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조사에 사용된 비용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예산에서 사용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거래분쟁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99년부터 대규모 서면조사의 실시와 함께 하도급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공정위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뢰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사실 그동안 공정위가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하도급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500억 원 미만에서 2500억 원 미만으로, 건설하도급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를 150위 미만에서 100위 미만으로 분쟁조정의뢰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뢰범위 확대와 하도급거래 서면조사의 확대 실시로 향후 분쟁조정실적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서면조사경비가 1600만 원 증액되었고 분쟁조정지원과 관련한 예산도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흐름으로 볼 때 오히려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의 공통점은 투명경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순리에 의해 회계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끌어 가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安大崙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徐相燮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徐相燮 委員** 한나라당의 徐相燮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고를 받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면서 느끼고 또 저희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략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경비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부서운영 내지는 기관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이고 이외에 주요사업비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인력을 가진 공무원조직이 일을 안 해도 들어가는 경비는 다 들어간다, 이러이러한 일을 시키려면 이만한 돈이 더 들어간다, 기본 체계가 이런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수들한테 급여를 주면서 강의하면 강의한다고 또 강의료를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본 컨셉(concept)에 대해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세입이 1351억으로 되어 있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徐相燮 委員** 그것을 얼마나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과징금……

○**徐相燮 委員** 검토보고서에서 예산과다로 지적한 CMP 1억 2000만 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을 전용해서 썼고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에 넣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본사업비하고 기본인건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닙니다. 조사활동비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

○**徐相燮 委員** 그리고 카르텔 제보에 대한 보상이 너무 많다, 연구검토한 것을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비가 여기 저기 들어가 있는데 8억 2778만 원이 너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외여비가 너무 많다, 전용재원을 관서운영비를 통해서 넉넉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매년 일어난다, 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실적도 없는데 예산을 계속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동의하세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徐相燮 委員** 내일 구체적으로 소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행정소송의 증가원인은 조사결과가 불공정하니까 자꾸 불복률이 높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소송비가 더 들어가는 것인데 숫자를 다 댈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할 테니까 구두로 여쭤보겠습니다.

불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사의 공정성, 충분한 증거능력, 납득할 만한 자료확보의 유무, 솔직히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능력 고양이에요. 반복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조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증거·자료의 확보가 정확히 되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또 아까 金富謙 위원도 얘기했지만 특화하는 어떤 부분도 있어야 돼요. 상주하는 변호사를 제도적으로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실시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상주는 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열한 사람 이미……

○**徐相燮 委員** 지금 변호사제도도 바뀌어 가지고 판·검사로 운용되지 않는 젊은 변호사들은 각 특정업무별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11명이 바로 채용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徐相燮 委員** 그러면 부분에 대한 능력도 높이고, 불복률도 낮추고, 비용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해 달라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밤낮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용역하고 이런 것만 반복해 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가 반복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처리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송이 많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徐相燮 委員** 어쨌든 간에 대책을 세우세요. 예산으로 때워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포괄적시장개선대책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없었어요. 다른 비용을 전용해 가지고 갑자기 했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조사활동비입니다.

○**徐相燮 委員** 2001년 예산에는 CMP라는 용어에 대한 예산이 없었지요? 2001년 1, 2월에 하면서 다른 예산을 갖다가 전용한 것이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다른 예산의 전용보다 조사활동비가 많은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조사활동비로 쓴 것입니다.

○**徐相燮 委員** 그러니까 2000년 말에 2001년 예산을 세우면서 계획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것은 갑자기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徐相燮 委員** 그러면 2000년 10, 11월에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들이 조사활동……

○**徐相燮 委員** 발뺌하시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셔야 돼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발뺌보다 조사활동비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徐相燮 委員** 2000년10월에 예산심사할 때에는 이 아이템이 없고 이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불가불 하게 되니까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뭘 아니라고 그러세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이것을 장기적으로 매년 정례화하려면 별도 예산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徐相燮 委員** 이 판단을 금년에 했다는 것은 작년 11, 12월에는 이 판단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때에는 이런 판단을 못하셨어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조사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徐相燮 委員** 그러면 이번에도 조사활동비로 넣지 뭐 하러 별도로 넣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사활동비는 개별사안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례화시키려면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徐相燮 委員** 어쨌든 CMP사업은 2001년에 준비 없이 갑자기 시행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에요. 그리고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徐相燮 委員**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뭘 아니라고 그러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이것을 계속해서 연례화시킬까 말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연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별도……

○**徐相燮 委員** 그리고 카르텔제보자 보상제도에 대한 구체적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5000만 원 그냥 달랑 넣어두셨는데 잘하면 좋지만 보상금을 정액제로 한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신고보상제도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는 것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지금 우리나라의 다른 법에도, 예를 들어서 밀수 같은 것에 포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徐相燮 委員** 카르텔에 참여한 내부직원이나 퇴임 임직원한테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야 확실한 것이지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徐相燮 委員** 법령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법령정비를 해야 될 뿐더러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하겠습니다.

○**徐相燮 委員**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거예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닙니다. 제보자한테 주는 돈이 5000만 원이고 분명한 지침은 만들겠습니다.

○**徐相燮 委員**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지적인데 이런 유사한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는 없다고 봅니다.

○**徐相燮 委員**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徐相燮 委員**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알겠습니다.

○**徐相燮 委員**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몇 가지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제는 DJ정부 출범 이후에 재벌개혁정책, 금융·기업구조조정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에 잘한 것도 많고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출자총액제한제도

를 다른 경제논리에 부딪혀 가지고 야금야금 완화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5 플러스 3 원칙에 대한 점검결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세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평가하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徐相燮 委員** 시중에서 '재벌정책 全斗煥 정권 때만도 못하다' 이런 것 보셨어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못 봤습니다.

○**徐相燮 委員**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반들은 너무 시니컬하게 지적한 면도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지적이에요. 말만 요란하고 한 게 없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李南基 위원장도 금년 10월31일 신라호텔의 모 생명과학대학원 모임에서 재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적 있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徐相燮 委員** 이것 정부 따로, 재경부 따로, 공정위 따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미리 조율해 가지고 한 목소리 내는 겁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를 나가서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徐相燮 委員** 금융연구원의 '재벌그룹의 출자행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셨어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봤습니다.

○**徐相燮 委員**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대기업집단의 출자·피출자관행이 최소한의 합리성을 보일 때까지 제도적 장치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 재벌기업에 대해서 부실한 계열회사 지원이 여전하다고 각종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 연구보고서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다만 기본 틀은 유지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입장은 위원님 측에서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徐相燮 委員**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는 적자계열사에 대한 출자비중이 48.4%입니다. 피출자 증가액 총 규모가 다른 그룹보다 1조 5000억 내지 2조 5000억 많은 대략 7조 원대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도산위기에 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지금 재벌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폐지하려 한다면 공정위의 존립근거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기본사업비, 인건비를 대가면서……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들이 눈 돌릴 일 없고, 그 자료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의 기본노선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徐相燮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류값 인하에 대해서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해 드릴게요. 무슨 원인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서 조사해야 될 책임은 없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여쭤 봅니다.

국제유류가가 20%보다 더 떨어졌다는데 국내유가는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정유사 이런 데의 담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나 내려갔는데 지금 3%밖에 소비자가에 영향을 안주고 있어요. 나머지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소위 유가변동의 차이를 누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들의 담합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까 嚴虎聲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徐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林鎭出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林鎭出 委員** 한나라당 林鎭出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세입세출예산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사업관련, 연구개발비의 과다계상문제관련, 전용재원 예산조정 그리고 기타 지적사항 네 가지 정도, 공정위 소관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67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70페이지의 내용, 93페이지, 167페이지 내용 등에 있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서면제출할테니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서면으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林鎭出 위원님의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李康斗 위원님, 韓和甲 위원님 역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역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安大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예, 답변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安大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당지원행위 조사여비와 클린 마켓 프로젝트 추진 조사여비는 그 사업성격상 통합해서 집행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예산은 현장에 출장가서 조사해야 되는 측면에서 많이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조사여비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성격상 저희 위원회에 신고되는 개별 신고사건의 사건처리를 위해서 나가서 조사하는 경비이고 CMP예산은 저희들이 모든 제도개선부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시장관행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매년 정례화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계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신문방송업 조사 시에 부당지원행위 조사여비를 사용했음에도 CMP를 위해서 신규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은 언론사조사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조사비용에 사용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CM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기존의 법령 집행방식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첫 해였기 때문에 기존의 조사활동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방송뿐만 아니고 다른 6개 분야 모두에서 각국에 되어 있는 조사비용들을 공통으로 사용했지 신문방송만 조사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기존사업비 등에서 충당함에 따라서 경비부족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 예산으로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분야별 예산집행 상황을 숫자로 원하시면 구체적인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은 하도급거래 서면조사 확대실시로 향후 분쟁조정실적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내년 분쟁조정지원 관련예산 2000만 원 증액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권서면조사의 확대실시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의 분쟁조정범위를 저희들이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99년 212건에 불과했던 조정이 금년도는 벌써 9월말 현재 224건으로 오히려 분쟁조정사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공정거래협회의 분쟁조정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인력이 현재 한두 명 가지고서 폭주하는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 하도급 부분에서도 더 증원을 해야 될 필요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李訓平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徐相燮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아까 얘기하지 않으신 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되 저는 항상 얘기드리지만 서면으로 하면 말이지요, 대충 한두 줄로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성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柱千**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회의계속)

○**委員長 朴柱千**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국가보훈처

○**委員長 朴柱千**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2002년도 국가보훈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達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국가보훈처장 李在達입니다.

존경하는 朴柱千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훈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02년도 국가보훈처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훈문화정착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보상금지급수준향상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며 둘째, 고령화 추세에 있는 국가유공자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의료,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셋째, 현충시설물 건립 및 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민족정기선양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며 넷째, 참전제대군인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시책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 7000만 원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40억 4300만 원 등 45억 1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상금수령자 사망 시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보상금과오불회수금과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될 수원시 소재 보훈교육연구원부지 보상비와 노후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부동산매각대 등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1조 4220억 3100만 원보다 12.8% 증액된 1조 6038억 5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보상금 지급에 1조 2801억 1700만 원, 의료지원에 1288억 7100만 원, 교육지원에 629억 원, 제대군인 등 지원 540억 원, 민족정기선양에 203억 7500만 원, 정보화 등 기타사업에 13억 84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가 465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에 60억 1200만 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노후청사신축비 36억 8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 운용규모는 3044억 2100만 원으로 수입부문은 대부원리금 회수금, 군인보험료 및 기금증식사업수익금 등이고 지출부문은 무주택자 주택지원금 등 대부금 군인보험금 및 기금증식사업비 등입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예탁만기회수금 등에서 63억 4800만 원을 조달하여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묘소단장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참전기념사업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운영수입 등에서 43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명예선양사업, 참전기념사업, 복리증진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훈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고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의 위국정신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보훈정책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金鍾成 차장입니다.

李鍾鼎 기획관리관입니다.

朴鍾文 보훈관리국장입니다.

黃仁煥 보훈선양국장입니다.

金斗玹 복지사업국장입니다.

白南煥 제대군인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2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은 기획관리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柱千** 예산안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河鍾範** 2002년도 국가보훈처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문제점 중심으로 개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5억 1300만 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4억 7000 만 원입니다.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은 다른 부처의 세입과는 달리 대부분이 보상금지급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불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 액수가 최근 2개 연도에 비하여 감소되어 보상금지급업무가 다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세입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상금지급업무처리에 보다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과오불 발생 자체를 사전에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2.2%가 증가되었으며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도에는 1.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를 주요사업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보상금 지급사업을 보면 2002년도 보상금 예산은 1조 2801억 1700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보다 145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은 복잡한 보상금 종목, 낮은 지급금액, 대상자 간 차등화 부적절 등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국가 재정규모에 의거하여 적정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그 세부내용을 확정한 것이라기 보다 국가재정여건과 과거인상률을 고려하여 기본연금 12.1%, 부가연금 5% 인상 등 최소한의 단가인상과 지급인원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예산반영이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수준이 여전히 실질생활보장에는 미흡하고 다른 한편 보상급 지급의 확대와 관련하여 6급 전·공상군경 유족연금승계,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증액 지급요구, 참전군인 영예수당 확대지급요구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합과 국민정서의 순화에 여전히 저해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입니다.

2002년도에는 5% 인상되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은 지급대상자 추계의 부정확성과 지급예상인원이 예산반영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여 이에 충당해 오고 있으며 2000년 결산심사 시에도 적정한 소요예산을 편성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도 집행액이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앞으로 적정소요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급 전·공상군경 유족연금 승계문제입니다.

현재 1~5급 상이자는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관계없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6급 상이자는 상이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 민원이 발생하고 생계곤란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증액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6급 전·공상군경 유족을 대상으로 5급 상이 사망자 유족연금의 50%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에 약 250억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 실태조사 여비의 중복계상문제입니다.

보훈관리 주요사업비에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실태조사 여비로 2000만 원과 제대군인지원 주요사업비에 참전군인 생계비 지급대상자 실태조사여비로 5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의 여비를 2002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또한 기본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 주요사업비에 신규 계상한 5000만 원의 여비는 생계보조비를 지급 받고 있는 참전군인의 생활정도 실태를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65세 이상의 참전군인 중에 7.8%에 해당하는 3만 1538명에게만 생계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적격자 색출보다는 동 제도의 홍보를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발굴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료지원사업은 2002년도에 1288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보훈병원 국비환자 진료예산은 1003억 34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총 353만 3424명을 진료예상인원으로 하였으나 아래 〔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이미 4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3년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498만 1541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실제 진료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 실제 진료한 인원에 해당하는 진료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 진료인원에 대하여 진료비 보상률을 현실화함으로써 보훈병원 운영의 독립채산성 및 전담의료기관화를 촉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위탁진료제도의 확대 및 위탁진료비 보상의 지체문제입니다.

위탁진료비는 95억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현재 89개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그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진료편의와 보훈병원의 환자진료적체를 해소하는 등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점진적 확대지정 운영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미지급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탁진료비의 미지급은 위탁병원의 보호환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와 직결되는 바 이월된 진료비의 부족청산과 함께 실제 진료액을 감안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보훈병원 신축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29억 100만 원입니다.

사립대 공납금 국고보조사업은 97년에서 99년까지 계속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과소편성되었으나 2000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충실히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고령화에 따라 취학자녀수의 감소추세 등으로 인하여 2000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액 444억 3400만 원 중 33억 2800만 원을 타 재원으로 전용 또는 불용시켰으며 2001년도에도 9월 말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향후 소요액을 감안하면 금년도에도 약 48여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2002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대군인 등 지원사업입니다.

참전군인 생계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2002년도 예산에 생계보조비 331억 4500만 원과 지급대상자 실태조사 여비로 5000만 원 등 331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대상자가 참전자의 5%에 불과합니다.

참전군인 생계보조비문제는 그 명칭의 변경 및 지급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사안으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李仁基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률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민족정기선양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7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백범기념관 건립사업에 6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정기선양 추진체계 미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각 부처 및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족정기선양사업을 보면 아래 〔표9〕와 같이 분산되어 있고 중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업무 중복수행에 따른 사업의 통합성 부족과 예산 및 사업집행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의 활동비 3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미흡한 바, 향후 동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관련부처에서 추진하는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체계적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위탁의 부적정문제입니다.

2002년도 보훈심사 기본사업비에 업무위탁대

가 및 사례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명의 전직 보훈심사위원에게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를 위탁하고 그 대가지급에 따른 예산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훈심사 기본업무를 외부인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보훈처 소관 3개 기금과 관련해서 이 중 보훈기금의 대부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자율 등 대부조건과 방법 등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생활향상과 주거안정 등 필요성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鎭出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林鎭出 委員 한나라당 林鎭出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민족정기선양위원회 이것 해보니까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저희들이 4회를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林鎭出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민족정기선양 관련 각종기념사업 및 행사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총괄조정 없이 산발적·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업무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중장기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협의체인 민족정기선양위원회를 설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족정기선양사업의 방향설정 및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이지 이것이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다시 민관합동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 2001년도 예산에 동 위원회 설치운영비 1500여만 원, 운영업무협의여비 400여만 원, 관련 유관기관·단체 식대 900여만 원 등 총 280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 집행했으나 그 활동실적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2001년도에 그렇게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에도 2001년도 예산안규모와 비슷한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실적에 비추어볼 때 동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고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민족정기선양위원회가 불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이 이렇게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 잘 해보자고 하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더 좀 힘을 넣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고 오히려 더 효율적인 부서에다가 이 예산을 배치시키는 게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활성화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실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더 설립취지에 맞게 활성화하는 문제는 처장 자신이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방안까지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鎭出 委員 그러면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예산 쓴 내역을 서면보고 해 주시면서 또 회의록에도 남겨 주시기 부탁합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알겠습니다.

○林鎭出 委員 다음 보훈심사업무위탁 관련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보훈심사위원에 대해서 연령적으로 6·25 이전 출생자 즉 6·25를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또 그 위에 전문성을 고려하고 역사성 인식도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가보훈처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213쪽 보훈심사위 기본사업비항 중 관서운영비목을 보면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명목으로 232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2명에 한해서 1년에 관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그렇습니다.

○林鎭出 委員 어떤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까?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6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업무가 적체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심지어 7, 8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林鎭出 委員** 그런데 2명으로 충분합니까?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아닙니다. 정식심사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계속 심사업무가 적체되어 가지고 인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저희들이 예비검토를 시킨 것이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보조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林鎭出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는 법령상의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고 보고 있고 또 2명의 전직 보훈심사위원에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심사를 위탁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업무위탁이라는 것은 표현이 조금……

○**林鎭出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저희들이 하는 일을 와서 보조하는 행정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林鎭出 委員** 그것으로는 이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그래서 지금 적체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연말까지면 저희들이 그런 정도는 해결이 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林鎭出 委員**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예산에도 같은 명목으로 3660만 원을 계상했는데……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그것은 연초까지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林鎭出 委員** 더 많잖아요? 3660만 원을 계상해 놨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林鎭出 委員** 그래서 이 심사는 어디까지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심사위원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훈처 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그 몇 배로 바깥에서 이 심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우선 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젊은 세대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고, 젊은 세대들은 6·25를 모르고 있고, 물론 그 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그저 공부를 해서 아는 거고, 6·25도 들어서 아는 정도고, 6·25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많은 참전군인 젊은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억울하게 떠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에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은 다시 지적하면서 보훈처는 어느 위원회보다 이런 예산편성에도 또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위촉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訓平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訓平 委員** 李訓平 위원입니다.

6급 전·공상군경유족 연금지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관계없이 유족에게 연금지급 되는 1급부터 5급까지 상이자와 상이원인으로 사망 시만 연금지급 되는 6급 상이자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급 상이자의 경우 고령과 상이처 악화에 따른 고통 및 그 유족의 뒷바라지와 함께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으나 보상수준의 격차가 심해서 생계의 곤란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2년도 예산요구 시 총 5394명을 월 2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연금 161억 8200만 원과 부가연금 88억 1900만 원을 포함한 25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는데 일반사회보장제도의 연금제도하에서도 유족에게 본인연금의 70%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6급 전·공상군경 중 상이처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생계안정을 위해서 6급 사망자 유족에게도 최소한 기본연금의 50%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영예심을 드높이고 가구주 사망에 따른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대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존경하는 林鎭出 위원이 민족정기선양사업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위한 민족정기선양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학술회의와 독립운동사 등

관련자료 수집·전시·편찬사업 등 독립운동 관련 유사업무를 보훈처와 문화관광부 산하 독립기념관에서 중복 수행해 가지고 정책의 비효율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국가보훈처의 경우 독립운동사 사료수집예산 2억 1919만 1000원을 포함한 3억 9211만 7000원이고 독립기념관의 경우 독립운동사 사료수집예산 3억 8700만 원을 포함한 5억 7859만 원이 동일유사사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되었는 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02년도 예산의 경우도 동일항목으로 4억 8580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문화관광부 산하의 독립기념관 예산도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었을 경우 일원화를 통한 종합성과 연계성의 확보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복편성의 경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훈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두 가지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6급 상이자가 자기 병으로 해서 돌아갔을 때는 연금이 계승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금이 계승 안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6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자꾸 5급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소요도 늘고 진료소요도 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6급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2분의 1, 기획예산처하고 협조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것은 국회에서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건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부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수집한다 하면 저희는 국가공훈자를 발굴하기 위한 측면에 목적을 두고는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관광부가 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실무자와 저희 실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 한번 토의를 하고 저도 문화관광부장관하고 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李訓平 委員**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또 국방부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국방부도 있고 문화관광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訓平 委員** 그런 것을 좀 보훈처에서도, 효율성이 중요하고 또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嚴虎聲 위원 질의하시지요.

○**嚴虎聲 委員** 저는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서면질의를 드리겠고 보훈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은 대개 민간인에게 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경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1시간 주차할 때는 무료이고 초과하면 정상가격의 20%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문제는 빼고 국가유공자의 차량에 마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는 국가유공자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돈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보훈처에서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별로 안 해 왔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국가에서 세출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돈만 나눠주면 다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예컨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보훈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국가유공자가 어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동안, 석 달 동안에 어떤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해당 부처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식으로 이의도 제기하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훈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좀 등한히 해 왔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그러한 사업에도 특단의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해서 일부 직원들에게는 그러한 임무를 전문적으로 맡기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저희들이 깊이 착안하지 못한 사항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계신데 저희들이 착안해서 해야 될 일을 거꾸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편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망라해서 저희 유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설문서도 받아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 지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저는 저대로 행자부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徐相燮 위원 질의하시지요.

○**徐相燮 委員** 한나라당의 徐相燮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순서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보훈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알겠습니다.

○**徐相燮 委員** 첫째는 현행 보상금 지급기준이 도시가구 가계비 등 사회경제지표와 비교할 때 상당수준 미흡해서 항상 연금인상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능력을 상실한 1급 상이군경, 뭐 최저생계비의 50% 수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최근 민주화 유공자 및 5·18광주민주화 관련자 보상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당사자들로 하여금 보상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을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상금 인상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피수급자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확보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여건에 따라서 퍼센트 인상률이 낮다, 가계비 증가율보다 월등히 낮다, 실질적으로 생계비와 관련시켜서 어느 정도 이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것을 못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국가의 세금 가지고 선양해 주면서 욕먹고 돈주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정하셔야 돼요.

네 번째가 아까 李訓平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6급 상이군경 사망을 5급과 비교할 때 상이처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뭐 법이 없어서 보완이 안 됐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당사자들이 보면 엄청난 형평성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사망일시금 지급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례비 이사백만 원 수준에도 부족하고 연금종결에 따른 보전수단으로서의 일시금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근거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지급, 월 5만 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지적을 많이 들으시지요? 지금 제가 제시한 여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훈처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를 바랍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알겠습니다.

○**徐相燮 委員** 그다음에 보훈병원 의료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들이 자꾸 노령화되고 상이처가 만성화되어 의료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기술외적 서비스를 제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

니까 늘기는 좀 늘었습니다. 만부득이 늘려가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 연말까지 273억 정도의 진료보상비가 부족한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169억 정도 늘려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훈병원의 원활한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진료보상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병원마다 실질적인 병원운영개선노력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솔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경영혁신방안도 연구하셔야 되고요.

특히 99년 광주병원 감사원 감사에서 92년부터 99년 사이에 구입된 초음파내시경 등 6종의 고가 의료장비를 살 때 예상되었던 이용실태보다 실제 사놓고 난 후의 사용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실제 쓴 것이 0.2%에서부터 20%도 안 돼요. 이런 고가장비를 들여다 놓고 안 쓸 바에는 왜 삽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것을 잘못 샀을 때 진료진들한테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고 현실적으로 이용 많이 한 것 빨리 투자해 주고, 이런 것을 따져 봐야지요.

물론 언젠가는 살 것이니까 좋은 장비를 예산 허용할 때 사놓고 보는 것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진료여건이 개선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따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 지원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완 말씀을 드리면 참전군인 생활보조금 지급대상 확대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보훈처에 관한 한 331억 정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계산에 의하면 참전명예수단으로 환원해서 65세 이상된 모든 참전군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면 1443억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의결되고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예비비로 씁니까? 아니면 그런 법안 분명히 통과 안 될 것이라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70세 이상으로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했는데 정부재정상 불가피하다, 반영시킬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를…… 사실 이 문제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도와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相燮 委員**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얼마 안 있다가 열릴 텐데, 물론 참전군인을 다 국가유공자로 만드느냐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령이 먼저인지 예산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립유공자…… 지난번 군사정권시절에 참전한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서운함을 많이…… 그네들을 낮게 했다는 불만이 있는 것 아시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徐相燮 委員**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다 지원해 주다가 73년도에 1945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만을 지원해 주고 1945년8월15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바뀐 것 아시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알고 있습니다.

○**徐相燮 委員**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해 주려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찍 돌아가셔서 안 해 주어도 돼요. 그 사람들 모시는 데 돈이 덜 드니까. 그런데 살아 계신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번에 법안심사에 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몇 명 안 되고 한 삼사십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일찍 반영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검토하겠습니다.

○**徐相燮 委員** 예산이 몇천 억, 몇 조 들어가면 문제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예산에 반영하고 고쳐야지요. 물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족정기선양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

세한 것은 서면으로 많이 대략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충시설물설치 내부지침(2001)에 명시된 설치기준이 모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의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건립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유관순기념관을 비롯해서 몇 개 사업의 경우 2002년 지원액을 감안하면 30%를 초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들쑥날쑥한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 많이 드렸는데 문제는 현충시설물 건립 주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시설물 건립 후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립주체, 누가 달라면 주고…… 힘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고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밀리고 그러면 못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해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정확히 뒤따라야 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지원 성과분석과 예산반영의 정도를 정확히 해서 무슨 과학적 체계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고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주고도 욕먹고 안 줘서 더 욕먹고.

왜 이럽니까, 국가에서 세금 쓰면서? 이것은 무조건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지원내용이 근거 없이 들쑥날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예산지원의 성과보고서가 분명하게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관련시켜서 개인적인 것인데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일전에 제가 어디 출장 갔다 오면서 들었습니다마는 항일무명용사탑을 국립묘지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반대해서 못 만든다고 하는데 이후 국방부와 다시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것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徐相燮 委員** 추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못 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됩니다.

○**徐相燮 委員** 현충국립공원이면 참전용사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유공자들이 선양하는 목적에 따라서 평수도 할애 받고 가서 있을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이 국가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근거를 여러 각도에서 나누어서 후세한테 기려야지요. 6·25 때 참전한 사람들만…… 그 국가만 있고 그 이전에는 국가가 없었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나서서 국방부에 협력을 요청하셔서 부지확보를 좀 하시도록 하세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徐相燮 委員** 추진된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아닙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고요……

○**徐相燮 委員**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사용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못 받아서 못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것이 도시공원법인가 이런 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방부장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徐相燮 委員** 그런데 국방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셨습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徐相燮 委員** 그리고 두 가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지만 하겠습니다.

군인보험자금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예탁되는 것이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00억이 예탁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알고 있습니다.

○**徐相燮 委員** 이것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어느 부처의 강요에 의해서 갖다가 맡긴 것입니까? 만약 공공자금으로 관리하다가 잘못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처장님 이전에 오신 차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그것은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徐相燮 委員**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군인보험자금도 꼭 여기에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그것은 매년 공공자

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운용계획하고 저희 보훈기금운용계획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徐相燮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언젠가 얘기드렸지만 이것 잘못하면…… 군인보험대부현황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주택 등 5개 분야에서 752억 정도의 대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이자랑 여기에서 나온 이자가 갈수록 점점 안 맞아가요. 이것 역마진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이것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맡기고 예탁한 데서…… 제대로 된 내부 계획된 그런 데에 맡기지 않으면 자꾸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년 9월말 기준 체납금액이 총 15억 7900만 원으로 안정적 기금 운용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보다 대부채권을 확대하는 것이 제대군인의 명예선양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그래서 그 500억 총괄…… 저희들이 예탁한도가 500억이고 매년 군인보험자금에서 100억 정도를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徐相燮 委員**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부한도를 스스로 줄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율이라든지 대부한도를 충분히 못 해 주니까 대부수요도 적을 수도 있고 이래서 대부이율을 지금은 7%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 5%로 낮추고 한도액도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부수요자가 만약 늘어나서 예탁금을 줄여야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

○**徐相燮 委員** 하여튼 제대군인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사업이라는 추진목적에 걸맞게 운용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자금을 보면 생존지사 특별예우금, 독립유공자 유족 제수비 등 숭모사업의 예산을 매년 세출예산에서 전입해서 운용하고 있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그렇습니다.

○**徐相燮 委員**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세출예산을 전입해서 운용하고 있어요?

이 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옛날에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에 따라서 보훈기금과 통합을 시도했는데 못했지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예.

○**徐相燮 委員** 그리고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자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희생대가로 대일청구권자금 중에서 일부 떼어온 것이지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그렇습니다.

○**徐相燮 委員** 그러면 이 상징성과, 광복회의 요망을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 기금으로 계속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자꾸 세출예산에서 전입하는 것은…… 대폭적으로 넣으려면 넣고 기금규모를 확대해서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에 맞도록 방안을 강구할 의사가 있어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광복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별도 기금으로 존치하기로 했고 최초에 대일청구권자금에서 25억을 가져왔고 그 이후에 정부출연금으로 4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어졌는데 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徐相燮 委員** 실질적으로 기금답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저희들이 원본 잠식을 안 하기 위해서 매년 정부로부터 소요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徐相燮 委員** 이것을 기금답게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金富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富謙 委員** 金富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徐相燮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독립유공자 손자녀 수급권문제가 1972년 국보위시절 비상각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모양인데 이 문제를 이번에 바꿀 의향이 없으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려주면 하실 것입니까? 보훈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광복 전에 돌아가신 분은 손자녀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자녀대까지 하고 있는데 광복 전에 돌아가신 분은, 본인이 돌아가셨거나

자녀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은 3대다 이렇게 봤고 해방 이후에 보훈제도가 생기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은 본인과 자녀 이렇게 2대가 혜택을 받는다는, 아까 말씀하신 비상각의라고 하지만 비상각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도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대까지로 국한하되 광복 전에 돌아가신 분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적기 때문에 손자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금수급권을 부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을 부활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1960년대에는 해방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손자녀한테까지도 혜택을 주었지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예.

○**金富謙 委員** 말하자면 혜택을 줄인 것 아닙니까?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富謙 委員** 이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희생·봉사에 대한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심지어 참전용사한테도 그만한 사회적 예우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유독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게만, 의병활동까지 포함하면 한 세대 이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데 보훈처가 직접 나서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두 가지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대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해방 이후에 돌아가신 분을 3대까지 할 경우에는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증손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이것이 같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미성년에 국한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장남이 돌아가시면 차남, 3남, 4남으로 옮겨가는데 이런 제도로 봐서는 수급기간이 전·공상군경보다는 상당히 우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손자까지 내려갈 경우에는 전·공상군경의 자녀도 완전히 수급권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1960년대에는 손자녀까지 갔다가 어떤 이유에서 줄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것이 한 번 시행되었고 그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던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더 반발이 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심사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심사할 때에도 형평의 둑을 무너뜨리게 되면 계속되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원님들께서 나서시면 구태여 굳이 반대할 입장은 아니신 것이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 문제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지금 1000여 명 이하 아니에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인원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金富謙 委員** 참전군인들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우문제가 나오는 판인데 독립운동이 갖는 특성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검토하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리고 6급 전·공상 유족연금 승계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작년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예산증액이 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깎인 것이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크게 타협을 하는 바람에 깎였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빼신 것 같아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저희들이 넣었는데 정부재정상 기획예산처에서 타협을 못보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위원님들이 저희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증액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역부족이어서 빠졌습니다.

○**金富謙 委員** 기획예산처의 검토과정에서……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것도 그렇고 빠진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70세 이상의 참전 군인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하고 6급 전·공상 유족 연금문제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저희 보훈처에서는 넣으려고 많이 했는데 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다음 李康來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康來 委員** 李康來 위원입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이쪽 상임위로 옮겨오게 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있게 예산을 검토할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보상금의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본연금은 12.1% 인상한 반면에 부가연금하고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각각 5%씩 인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가연금은 공헌도, 희생도 등의 개별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고 간호수당은 중상이자의 간병인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상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보상금보다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또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96년4월 수당신설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요구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기본연금 정도의 인상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연금과 부가연금, 간호수당 사이에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져서 보상혜택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사회적 후생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고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처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국용사묘지의 소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호국용사묘지를 2000년에는 경북 영천지역에서 완공했고 금년 11월에는 전라북도 임실지역을 완공할 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다시 수도권지역에 호국용사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비가 14억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기 조성한 묘지에 아직 안장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검토 없이 또다시 수도권지역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소지가 많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수도권묘지 안장대상자를 서울·경기·강원·충청지역까지 포함해서 10만 평 규모로 구상하고 있는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요자와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2, 3개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두 가지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본연금은 12.1%가 이번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간호수당이라든가 부가연금이 5%밖에 못 올랐는데 최초에는 저희가 18%를 다 인상요구했습니다.

○**李康來 委員**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기획예산처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기본연금만 12.1%, 그것도 5% 얘기가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까지 가셔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기본연금만 12.1% 오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머지는 5%밖에 못 올랐습니다.

또 고엽제후유의증수당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의 욕심 같아서는 기본연금과 같은 수준으로라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가재정상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문제도 기본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는데 역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10만 평 규모의 묘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선 1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몇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재향군인회 측하고도 검토를 시키고 해서……

○**李康來 委員** 지금 처장님의 말씀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만 무조건 반영했다는 말씀입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수도권지역 한 군데를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국토의 효율화를 위해서 몇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李康來 委員** 서울·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원도나 충청지역까지를 한 곳으로 선정하는 것은 접근성이라는 측면의 문제도 있고 효율성 측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땅값을 계산하면 더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알겠습니다.

○**李康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李性憲 위원 질의하시지요.

○**李性憲 委員** 한나라당의 李性憲 위원입니다.

제대군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전군인 생계보조비가 2002년 예산에 331억 4500만 원, 지급대상자 실태조사여비로 5000만 원 해서 33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제대군인지원 기본사업비 중 국내여비로 참전군인 생계보조비 지급실태 점검명목으로 133만 9000억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계보조비 지급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 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자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李性憲 委員** 그런데 2000년10월1일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생계보조비가 2000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로 75억 46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생계보조비가 6만 5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2만 3918명을 추정하여 예비비 46억 6332만 원을 예산항목 간 조정을 통해서 배정받았습니다. 맞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李性憲 委員** 그런데 실질적인 인원을 보니까 월 1만 5210명에 그쳤고 29억 6573만 원을 지출해서 예비비 배정액 대비 39.3%, 예산현액 대비 63.6%만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억 975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李性憲 委員** 2001년8월 말 현재 지급인원은 65세 이상 등록 참전군인의 18%인 3만 222명이며 향후 증가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01년 예산에는 3만 7800명을 지급계획인원으로 계상했고 2002년도에는 4만 2493명을 지급계획인원으로 계상하고 있지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그렇습니다.

○**李性憲 委員** 이렇게 연도별 지급계획인원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추계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 평균 증가인원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22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李性憲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은 65세 이상의 참전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65세 이상으로 할 경우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1440억 정도 될 것입니다.

○**李性憲 委員** 보훈처에서는 7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획예산처하고 상의하셨다고……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70세 이상 플러스 65세 이상으로 현재 혜택받고 계신 분 이렇게 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李性憲 委員**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법이 통과되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법이 통과된다면 그 문제는 예비비를 사용하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지출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李性憲 委員**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저희들이 70세 이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입법하셔서 지원해 주신다면 처장의 입장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李性憲 委員** 이것은 보훈처를 위해서가 아

니고 실제로 참전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참전용사라고 하더라도 생계곤란자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 참전용사 중에서 6%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6%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명예도 그렇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보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선양과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처에서 안 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법은 처리할 테니까 반드시 이것을 관철해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십시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性憲 委員** 예산을 가지고 문제가 되면 70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70세 이상으로 참전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 70세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90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李性憲 委員** 기존 예산에서 9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國家報勳處次長 金鍾成** 기존 예산이 330억 원입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저희가 70세 이상을 했던 것은 잘사는 사람이고 못사는 사람이고 70세 이상이 되면 돈을 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다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현재 6·25참전용사의 평균연령이 72세입니다. 65세는 그래도 생활능력이 있고 70세 이상은 잘사는 분이고 못사는 분이고 간에 다 같은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70세로 한 것입니다.

○**李性憲 委員** 실제로 그쪽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72세도 있지만 70세 정도가 가장 막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그렇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압력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위원님 입장이나 보훈처장 제 입장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 저희가 보호해 드려야 될 분을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많은 금액을 드린다는 것에 제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또 정부의 입장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밖에 더 이루지 못했습니다.

○**李性憲 委員**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참전군인들 지금보면 최근래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또 그분들의 명예도 위해 주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민주화운동도 중요하지만 6·25 또 월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있도록 만들었던 분들에게 사실은 정부에서 또 국민이 할 수 있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안처리는 저희가 할 테니까 반드시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동시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훈처가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비를 직책보조비로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할 테니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大崙 위원, 끝으로 질의해 주시지요.

○**安大崙 委員** 安大崙 위원입니다.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민간단체가 각자의 기능·지역별로 민족정기선양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중복과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을 이유로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기구 성격인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운영하여 민족정기선양사업의 방향설정, 역할분담 및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동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고, 총 예산 약 2,900만 원 중 900만 원 정도만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만큼 일을 할 것이 없어서, 충분히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집행 안 했는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련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족정기선양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조정이 제대

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도 예산에 3,3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활동실적을 감안할 경우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에 3,300만 원 계상되었다는 것은 작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모순이 아니냐, 일을 더 많이 하겠다면 참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8쪽과 29쪽에서도 검토되었듯이 독립운동기념행사의 경우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가 분산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독립운동관련업무는 국가보훈처와 문화관광부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참전기념관련업무 또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소위 전쟁기념관 간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기념시설물 및 조형물 건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념사업회가 서로 간에 일관성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각 부처 간의 예산중복은 국가재정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렇게 자꾸만 중복되어 있는 것이 보훈처는 항상 끼어들고 있다고 일종의 깍두기식 아니냐, 보훈처의 역할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의 시스템인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부처 간 업무와 이해를 조정하기 힘들다면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국가보훈처가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대책마련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보훈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독립유공자 포상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 포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8월15일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총 8,96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사료를 통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박은식의 지혈사 12만 명, 문일민의 독립운동사 10만 명,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사 3만 명 등을 검토한 결과 총 1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총 15만 명 이렇게 나타난 것이 국가보훈처가 언제 이것을 계산한 것입니까? 나도 이것을 체크를 못했어요. 15만 명이라고 언제 했습니까? 누가 아는 분 안 계세요? 언제 시점의 통계를 15만 명으로 잡았습니까? 박은식의 지혈사는 1920년도 기준이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보훈처에서 언제 15만 명으로 자리가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찾아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나중에 찾아서 한마디 해 주세요.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추정하고 있는 순국인사 약 15만 명 중 6%정도가 그러니까 8,996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매년 150여명 정도가 포상자로 발굴되고 있어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이런 실적이 미미한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만약 아시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독립운동관련자료의 체계적 수립과 관리, 독립유공자의 적극적 발굴을 위해서는 2002년도 독립운동 사료발굴 관련예산으로 책정된 2억 2600만 원으로는 턱없는 예산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민족정기선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집행을 적게 책정하는 이유가 나는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예산을 아끼겠다는 얘기인지, 일을 많이 하고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일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일을 하시려면 예산을 굉장히 증액시켜야 해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책정을 적게 잡는 것은……

그것을 한 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가보훈처장께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앞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인사에 대해 수혜를 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보훈처장께서는 남달리 각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安大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수고하셨어요.

답변 직접 하시겠습니까?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예.

우선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의 실적 미흡문제는 林鎭出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4회를 저희가 했는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와 중복되는 이런 문제도 똑같은 질의이십니다. 이번에……

○安大崙 委員 그런데 그 중복문제는 좀더 연구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훈처장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예산낭비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체제입니다. 이것은 좀 중심이 되어서 전적으로 뜯어 고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하나의 치적이 될 것입니다.

○委員長 朴柱千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부된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8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8일 회의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원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참 조)

2002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개요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0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Ⅳ.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안
Ⅴ.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

Ⅰ. 일반현황

1. 조 직

○직 제
- 처 본 부 : 3국·2관·11과·7담당관
- 소속기관 :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20), 보훈심사위원회, 국립4·19묘지관리소

○정 원 : 1,163명(본부 218, 소속기관 945)

○산하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2. 임무 및 주요사업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영예로운 생활보장
- 보훈연금, 수당등 보상금지급
- 의료·주택·취업·교육지원, 양로·양육보호
- 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 및 보훈기금증식

○민족정기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등 독립기념사업
- 임정수립기념일, 현충일, 4·19등 각종 보훈행사
- 국가유공자 단체의 애국활동지원

○참전·제대군인지원 및 현역 군인보험
- 참전·제대군인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사업
- 중사이상 현역군인의 군인보험과 장병위문사업

3. 보훈대상자 현황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01. 9. 30현재)

대 상	가 구	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
합 계	226,298	100.0	13,971
순국선열·애국지사	5,132	2.3	794
전·공상군경	66,579	29.4	5,893

대 상	가 구	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
전몰·순직군경유족	79,198	35.0	3,085
무공·보국수훈자	62,917	27.8	3,433
재일학도의용군인	302	0.1	1
4·19혁명희생·공로자	472	0.2	102
순직·공상공무원	11,698	5.2	663

○ 지원대상 : 866천명
- 참전군인 : 65만명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7만3천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42,185명
- 반공귀순상이자 : 366명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
○ 보훈문화 정착의 기반 조성
○ 참전·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명예선양 확대

□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보훈연금, 수당등 보상금 지급수준 향상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교육비 지원

□ 고령화 추세에 부응한 의료·복지시책 확충
-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시설·장비의 현대화
- 노후복지시설 운영지원

□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내실화
- 애국정신 계승발전사업 확대
- 독립운동관련 시설물 건립 및 관리 강화

□ 참전군인 복리증진 및 명예선양
- 호국용사 묘지조성 및 관리
- 참전군인 생계보조비 지급

Ⅱ. 200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합 계	654	4,513	3,859	590.1	
일 반 회 계	654	470	△184	△28.1	-보상금 과오불회수금등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	4,043	4,043	순증	-토지매각대

2.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합 계	1,422,031	1,603,850	181,819	12.8	
일 반 회 계	1,420,431	1,594,151	173,720	12.2	- 주요사업비, 기본사업비, 인건비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1,600	6,012	4,412	276	- 보철용 LPG차량지원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	3,687	3,687	순증	- 노후청사 신축

3.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422,031	1,603,850	181,819	12.8
[일 반 회 계]	1,420,431	1,594,151	173,720	12.2
□ 주요사업비	1,378,240	1,547,647	169,407	12.3
○보상금 지급	1,134,395	1,280,117	145,722	12.9
○의 료 지 원	111,876	128,871	16,995	15.2
○교 육 지 원	65,751	62,900	△2,851	△4.3
○제대군인등지원	52,454	54,000	1,546	3.0
○민족정기선양	12,553	20,375	7,822	62.3
○정보화등 기타	1,211	1,384	173	14.3
□ 기본사업비	8,849	9,557	708	8.0
□ 인 건 비	33,342	36,947	3,605	10.8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1,600	6,012	4,412	276
○LPG차량지원	1,600	6,012	4,412	276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	3,687	3,687	순증
○노후청사신축	-	3,687	3,687	순증

Ⅳ. 일반회계사업별 예산안

1. 보상금 지급

□ 기본연금

○ 단가 : 12.1% 인상(535 ⇨ 600천원)

○ 인원 : 4,720명 증(125,259 ⇨ 129,979명)

□ 부가연금

○ 단가 : 5% 인상(11~1,841 ⇨ 12~1,933천원)

○ 인원 : 5,123명 증(111,481 ⇨ 116,604명)

□ 간호수당

○ 단가 : 5% 인상(400~1,350 ⇨ 420~1,418천원)

○ 인원 : △305명(5,103 ⇨ 4,798명)

□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 2세환자 수당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합 계	1,134,395	1,280,117	145,722	12.9	
○기본연금	755,643 (125,259명)	855,412 (129,979명)	99,769 (4,720명)	13.2 (3.8)	- 단가 : 12.1% 인상 (월535→600천원) ※ 7급 : 161→180천원
○부가연금	202,007 (111,481명)	214,427 (116,604명)	12,420 (5,123명)	6.2 (4.6)	- 단가 : 평균 5% 인상 (월11~1,841→12~1,933천원)
○간호수당	52,556 (5,103명)	52,103 (4,798명)	△453 (△305명)	△0.9 (△6.0)	- 단가 : 5% 인상 ·1급1항 : 1,350→1,418천원 ·1급2항 : 1,300→1,365 〃 ·1급3항 : 1,250→1,313 〃 ·2급 : 400→420 〃
○생활조정수당	2,228 (2,687명)	3,335 (3,987명)	1,107 (1,300명)	49.7 (48.4)	- 단가 : 2천원 인상 ·3인이하 : 65→67천원 ·4인이상 : 75→77천원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17,904 (9,354명)	31,557 (10,519명)	13,653 (1,165명)	76.3 (12.5)	- 단가 : 월250천원(2001수준) ※ 연액계상(6→12월)
○사망 일시금	3,984 (4,029명)	3,897 (3,921명)	△87 (△108명)	△2.2 (△2.7)	- 단가 : 2001년 수준
○재해 보상금	8,700 (238명)	8,054 (200명)	△646 (△38명)	△7.4 (△16.0)	- 군인봉급 인상과 연계
○영주귀국정착금	240 (6가구)	150 (3가구)	△90 (△3가구)	△37.5 (△50.0)	- 단가 : 40→50백만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80,917 (28,633명)	91,752 (30,685명)	10,835 (2,052명)	13.4 (7.2)	- 단가 : 5% 인상 (월210~420천원) ※ 2세환자(30명) ·고 도(525) ·중 도(368) ·경 도(263)
○무공영예수당	10,216 (34,054)	19,430 (32,384)	9,214 (△1,670)	90.2 (△4.9)	- 단가 : 50천원(2001년수준) ※ 연액계상(6→12월)

○ 단가 : 5% 인상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200～400 ⇨ 210～420천원
- 고엽제2세환자 수당 : 250～500 ⇨ 263～525천원

○ 인원 : 2,052명 증(28,633 ⇨ 30,685명)

□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정착금
○ 단가 : 25% 증(40 ⇨ 50백만원)
○ 물량 : △3가구(6 ⇨ 3가구)

□ 사망일시금등 기타보상금
○ 지급단가는 2001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실소요 인원 반영

2. 의료지원

□ 보훈병원진료
○ 진료단가 : 물가인상율 감안 3% 인상
- 입 원 : 85,347 ⇨ 87,907원
- 외 래 : 17,147 ⇨ 17,661원

○ 진료인원
- 국가유공자 진료인원은 과거 3년간 평균 진료비증가율수준(11.6%) 반영

○ 위탁가료비 과년도 부족분(69억원) 및 의약분업관련 감면진료 약제비(2억원) 반영

□ 보훈병원 장비 및 시설보강
○ 의료장비 현대화 지속 추진(12억원)
○ 광주보훈병원 신축이전(61억원)

3. 교육지원

□ 사립대공납금 국고보조
○ 단가 : 2001년 실지급액 대비 6% 인상
・일반대 ┌ 신입생 : 2,706 → 2,735천원
　　└ 재학생 : 2,438 → 2,476 〃
・전문대 ┌ 신입생 : 2,106 → 2,150 〃
　　└ 재학생 : 1,785 → 1,853 〃

○ 인원 :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취학인원 감소추세 감안 △1,742명(26,835 ⇨ 25,093명)

□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수업료 보조
○ 단가 : 2001년 실지급액 대비 6% 인상
○ 인원 : '02년부터 중1년 무상교육실시등에 따라 △554명(2,527 ⇨ 1,973명)

□ 학자금지급
○ 단가 : 2001년 수준(80～600천원)
○ 인원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취학자녀 감소추세 반영 △2,223명(17,027 ⇨ 14,804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합 계	111,876	128,871	16,995	15.2	
○ 보훈병원진료	87,324	100,334	13,010	14.9	- 단가: 3% 인상 - 인원: 361천명 증(3,172→3,533천명)
○ 위탁가료비	6,256	9,501	3,245	51.9	- 단가: 3% 인상 - 과년도 부족분 6,930백만원 반영
○ 감면진료비	2,793	3,182	389	13.9	- 단가 : 3% 인상 - 과년도 감면 약제비 200백만원
○ 고엽제환자지원	5,096	5,096	-	-	- 검진비 : 4,896백만원 - 고엽제특별지원 : 200 〃
○ 보철구공급	3,144	3,458	314	10.0	- 단가 : 3% 인상 - 물량 : 505개 증(6,300→6,805개)
○ 의료장비구입	1,200	1,200	-	-	- C/T 및 체외초음파 신쇄석기 구입비
○ 광주보훈병원신축·이전	5,000	6,100	1,100	22.0	- 총사업비 : 578억 (국고 192, 공단 386)
○ 장례식장신축	1,063	-	△1,063	△100.0	- 2001년 완료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합 계	65,751	62,900	△2,851	△4.3	
○사립대공납금 국고보조	61,699	59,450	△2,249	△3.6	- 단가 : 2001년도 실지급액 대비 6% 인상
○제대군인자녀 수업료보조등	2,243	1,815	△428	△19.1	〃
○학 자 금	1,809	1,635	△174	△9.6	- 단가 : 2001년 수준

4. 민족정기선양

□ 애국정신계승 발전사업

○3·1운동 의거지별 만세운동 재현행사등 계속사업 전년도 수준유지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확대

○윤봉길의사 의거 70주년 기념행사 신규(80백만원) 반영

□ 독립유공자 예우

○생존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예우수준 향상을 위해 예우금 및 제수비 지급(2001년 수준)

- 예우금 : 월300~600천원, 제수비 : 200천원

□ 마산 3·15기념회관 재건축

○2차년도 공사비 30억원 반영

○총사업비 : 197억원(국고, 지방비 각각 50% 부담)

□ 백범기념관 건립

○전시관등 추가공사비 및 성금조성 부족분 60억원 반영

○총사업비 : 180억원(국고 160, 성금조성 20)

□ 현충시설물 건립지원

○김좌진장군 기념사업(8억원, 중국)

○해외독립운동사적지 표지석설치(6억원)

○의암유인석 선생유적지 성역화등(52억원)

□ 6·25 50주년 기념사업

○영천대첩기념탑 건립(650백만원)

○해외참전용사 방한 기념행사 등(6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합 계	12,553	20,375	7,822	62.3	
○애국정신계승 발전사업	1,361	1,471	110	8.1	- 윤봉길의사 의거 70주년 기념사업 신규 : 80백만원
○독립유공자예우	1,466	1,466	-	-	- 2001년 수준
○마산3·15기념회관 재건축	4,000	3,000	△1,000	△25.0	- 2차년도 공사비
○백범기념관 건립	-	6,000	6,000	순증	- 총사업비 180억원(국고 160, 자부담 20)
○현충시설물건립지원	3,793	6,623	2,830	74.6	- 김좌진장군 기념사업 800백만원 -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표지석 600 〃 - 유인석선생 유적지 성역화등 현충시설물 건립 : 5,223 〃
○국립4.19묘지 민간위탁	188	200	12	6.4	- 물가인상율 3% 및 수목, 잔디 비료대 등 추가
○6·25 50주년 기념사업	1,745	1,265	△480	△27.5	- 영천대첩기념탑 650백만원 - 해외참전 방한기념행사 300 〃 - 6·25기념행사등 315 〃
○4·19도서관 지원	-	350	350	순증	- 서가확충 및 신간도서구입비

5. 제대군인등 지원

□ 호국용사 묘지조성 및 관리

○ 수도권 묘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1,400백만원)

- 총사업비 : 280억원(국고 240, 향군부담 40)
- 사업기간 : 2002~2005년

○ 영천, 임실 호국용사 묘지관리비(2,000백만원)

□ 참전군인 생계보조

○ 단가 : 월65천원(2001년 수준)

○ 지급대상 : 65세이상 참전군인중 생계곤란자 (42,493명)

□ 참전군인등 지원

○ 참전군인 장제비 지급 (600백만원)

○ 창군 및 참전원로지원 (150 〃)

○ 참전군인 재방한 사업등(755 〃)

□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지원

○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비 : 750백만원(15개소)

○ 물리치료장비구입비 : 200백만원

□ 국가유공자 단체운영지원 등

○ 광복회등 9개 보훈단체운영비 인상(5,315 ⇨ 5,573백만원)

○ 민영교통시설이용보조 현실화(481 ⇨ 617백만원)

○ 국가유공자 증가에 따른 보훈신문 발간부수 증가 반영(200,000 ⇨ 220,000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합 계	52,454	54,000	1,546	3.0	
○ 참전군인묘지조성 및 관리	5,521	3,400	△2,121	△38.4	- 수도권지역 묘지조성 부지매입비 : 1,400백만원 - 임실·영천 묘지관리비 2,000백만원
○ 군인보험료	7,745	8,101	356	4.6	- 단가 : 군인봉급인상과 연계 - 인원 : △1,595명 (129,896→113,940명)
○ 참전군인 생계보조	29,484	33,195	3,711	12.6	- 단가 : 월65천원(2001년수준) - 인원 : 4,693명 증 (37,800→42,493명)
○ 참전군인등 지원	1,405	1,505	100	7.1	- 장제비 : 600백만원 - 창군원로지원 : 150백만원 - 참전군인 재방한사업등 : 755백만원
○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	700	950	250	35.7	- 15개 복지회관(서울제외) 운영비 : 750백만원 - 물리치료 장비구입비 : 200백만원
○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비	1,200	-	△1,200	△100.0	- 2001년 완료사업
○ 단체지원	6,399	6,849	450	7.0	- 광복회등 9개 보훈단체 운영비 5,573백만원 - 민영교통시설이용보조 617백만원 - 보훈신문발간비 등 659백만원

6. 정보화등 기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합 계	1,211	1,384	173	14.3	
○정보화사업	430	652	222	51.6	-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PC보급 확대
○노후청사 및 시설 개·보수	770	664	△106	△13.8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등
○고엽제 국제소송 지원	11	11	-	-	- 2001년 수준
○비연고 근무공무원 숙소임차	-	57	57	순증	- 제주, 강릉, 목포지청 비연고 근무공무원 숙고 임차

7. 기본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합 계	8,849	9,557	708	8.0	
○경상적경비	4,163	4,669	506	12.2	- 공공요금 등
○기준성경비	942	995	53	5.6	- 직책급, 차량비 등
○교육훈련경비	77	77	-	-	- 공무원 위탁교육비
○사업성경비	3,667	3,816	149	4.1	- 보훈기념행사 및 양로양육보호경비

Ⅴ.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사 업 명 : 보철용 LPG차량지원

□ 사업내용

○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용 LPG연료를 충전소에서 세금인상전 가격으로 공급

○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당해 LPG충전소에 보전

2.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 사 업 명 : 노후청사 신축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LPG차량지원	1,600	6,012	4,412	276	- 단가 : 월 5,782원 인상 (14,259→20,041원) - 인원 : 2,558명 증가 (22,442→25,000명) - 연액계상(5→12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 노후청사신축	-	3,687	3,687	순증	- 울산지청 : 2,074백만원 -충주지청 : 1,613백만원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69년 건립한 노후청사의 신축이전으로 사무환경개선

○出席委員(12人)

金富謙　朴炳錫　朴柱宣　朴柱千
徐相燮　安大崙　嚴虎聲　李康斗
李康來　李性憲　李訓平　林鎭出

○請暇委員(3人)

李富榮　李海瓚　張泰玩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鄭鎭龍
전문위원　河鍾範

○政府側參席者

국가보훈처
처장　李在達
차장　金鍾成
기획관리관　李鍾鼎
보훈관리국장　朴鍾文
보훈선양국장　黃仁煥
복지사업국장　金斗玹
제대군인정책관　白南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李南基
부위원장　金炳日
사무처장　趙學國
기획관리관　李炳周
정책국장　許宣
독점국장　吳晟煥
경쟁국장　安熙元
심판관리관　任錫奎
유통거래과장　玉化榮